

제 호



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대 표 자:

○ 지 정 기 간: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